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9.(월) 10:00 / 배포 2026. 11. 9.(월) 08:30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이행감독기구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준수사항 명문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이하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11. 10.부터 12. 01.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은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위 예규)」에 근거하여 이행감독기구로 하여금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왔으나, 동 지침은 모든 위반유형의 시정조치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결합에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결합에 특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해당 결합의 금지뿐 아니라, 자산매각 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 일정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명령과 같은 **행태적 조치**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그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로 하여금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하여 **시정조치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기업결합 분야에서 **이행감독기구**를 활용한 시정조치 이행점검은 **미국, EU** 등 **해외 경쟁당국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며, 이들의 이행감독기구 구성·운영 규정, 실무관행 등을 참고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결합당사회사가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이감위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합당사회사에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결합당사회사는 지체 없이 해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결합당사회사가 이감위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그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공정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해당 보수 외 그 어떤 경제적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감위**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결합당사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시정조치의 특성에 맞는 이행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제 기구인 이감위 뿐 아니라 독임제 기구인 **이행감독인도 이행감독기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행감독인 선임 시 이감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의 근거 뿐 아니라 그 운영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도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소식 · 뉴스 → 입법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2월 01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 반대 · 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팩스 : 044-200-5224 * 전자우편 : sooyeonme@korea.kr

[붙임]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혜정 (044-200-4932)
		담당자	사무관	양수연 (044-200-49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Ⅰ. 목적 (생략)	Ⅰ. 목적 (현행과 같음)
Ⅱ. 용어의 정의	Ⅱ. 용어의 정의
1. ~ 10. (생 략)	1.~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이행감독위원회”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
<신 설>	12. “이행감독인”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Ⅲ. ~ Ⅳ. (생략)	Ⅲ. ~ Ⅳ. (현행과 같음)
Ⅴ.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Ⅴ.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신 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하여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이행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1)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력 등을 가진 자로서 결합당사회사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인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결합당사회사는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을

현 행	개정안
	선임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나.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의 보수 (1) 결합당사회사는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의 직무 난이도, 직무분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2) 결합당사회사는 보수액과 그 산정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3) 결합당사회사는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보수 외에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경제적 이익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품등”을 말한다. 다. 이행감독위원회의 권한 (1) 이행감독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합당사회사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방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합당사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이행감독위원회의 의무 (1)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감

현 행	개정안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한다. (2) 이행감독위원회는 이행 점검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행감독위원회는 (2)의 보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 요청이 있거나, 그 외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결합당사회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목적 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의 사임 및 해임 (1)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임할 수 있다. (2)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은 이해충돌 등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결합당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결합당사회사는 (2)의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외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이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3)의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직권으로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합당사회사에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합당사회사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바.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이행감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현 행	개정안
	결합당사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가 불충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당사회사에 대하여 이행감독위원회를 해산하고 재설치하도록 하거나,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이행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사.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II. 11. 및 12., V. 3.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기업결합 신고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